

2025년도 청년인턴 지원사업 공고

대전광역시에서는 산업현장의 인턴 기회를 통한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고, 대전 소재 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청년 인턴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(기관) 및 인턴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1월 22일

대전광역시장

I

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5년 청년 인턴 지원 사업
- 사업기간 : 2025년 1월 ~ 12월(예산소진 시까지)
- 참여대상
 - 인턴 : (1유형) 대전 정착형 청년일자리 종합 프로젝트 사업 참여 청년
(2유형) 대전시 거주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
(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전시 등재한 39세 이하 청년)
 - 기업 : (1유형) 대전 정착형 청년일자리 종합 프로젝트 사업 참여 기업
(2유형) 피보험자 5인 이상 대전소재 중소·중견기업, 사회·경제 단체, 비영리법인 등

다만,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

※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5인 미만 벤처기업

※ 인증된 벤처기업 여부는 중소벤처기업 벤처확인시스템(www.venturein.or.kr)에서 확인 가능

④ 제외대상

- 대전시 청년인턴으로 1개월 이상 참여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
- 인턴채용일 전 1개월 이내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
※ 단 1유형 참여자,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실직자, 단시간 근로(주30시간미만), 일용근로형태 취업했던 자 예외
-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※ 「직업안정법」에 따른 구직신청이 가능한 체류자격 준용(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 체류 자격자는 가능)
- 인턴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인턴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한 자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※ 단 대전 정착형 청년일자리 종합 프로젝트로 근무했던 자는 제외
- 인턴채용예정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존비속, 형제.자매 관계에 있는 자
-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중 인자
- 다른 국가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
- 파견 및 유흥 관련 직종 취업자

⑤ 제외기업

-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
 - * 일반유통점업, 무도유통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
-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‘청소년유해업소’,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,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, 공중위생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(단란주점, 유흥주점, 노래연습장업, 비디오감상실업, 무도장업, 복권발행업 등)
- 3개월 미만의 계절적.일시적 인력수요 업체
- 직계존비속 등이 경영하는 사업장, 다단계판매업체, 외근영업직 채용 기업(보험회사, 제약회사, 물류도매업 등) 등
-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,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
- 학원「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」 및 「도로교통법」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시설체단 호텔업은 가능
- 정부 공공기관, 출자출연기관, 지방공기업 등
-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정상적인 직무 체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
- 최근 3년(2022~2024년)이내 본 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하여 정규직 전환 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
- 타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 중인 기업 중복 수혜 불가
※ 단, 지원가능인원에서 인건비 지원금 수혜중인 인원 제외한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
- 기타 대전시에서 청년인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

○ 지원규모 : 80명

○ 지원내용

- (인건비) 인턴 1인당 3개월 / 월 2,096,270원 * 2025년도 최저임금

※ 대전시(시비) 월 2,000,000원 지원, 기업 96,270원 이상 부담

- (교통비) 인턴 1인당 3개월 / 월 50,000원 (최대 150,000원)

※ 기업은 인턴에게 대전시 지원금 포함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임금을 산정, 지급하여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여야 함. 단, 다른 정부 지원금(인건비) 이중 수혜 불가

※ 협약시점 및 예산소진 추이에 따라 지원기간 3개월 미만으로 적용될 수 있음

○ 지원분야 : 기획, 마케팅, 홍보, 연구 등 아래 제외 일자리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

④ 제외 일자리

- 전화·방문고객 단순상담
- 커피점·마트, 요식업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·판매
- 건설·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
-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
- 간호(조무)사, 이·미용사, 운전기사, 보육기사,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·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·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인턴 참여
-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일자리

II

신청방법

○ 신청기간: 2025. 1월 ~ (예산소진시까지)

○ 신청방법: 대전일자리정보망(www.jobdaejeon.or.kr) 직접 신청

- 서식자료실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사용

○ 공고문 확인: - 대전일자리정보망(www.jobdaejeon.or.kr)

- 대전광역시청(www.daejeon.go.kr)

-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(www.djbea.or.kr)

- 대전일자리지원센터(<http://daejeon.work.go.kr>)

○ 문의처: 대전일자리지원센터(☎ 042-719-8345, 8332)

○ 심사 및 결과 통보: 선정결과 기업 및 인턴 개별 통지

○ 세부 신청 절차

[청년]

- 참여를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은 연중 수시 대전일자리정보망 (www.jobdaejeon.or.kr) 통해 신청
- (신청서류)
 - ①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·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※ 대전일자리정보망(www.jobdaejeon.or.kr)-서식자료실 내 동의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서명
 - ② 주민등록초본(공고일('25.1.22.) 이후 발급본)
 -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
 - ③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(신청일 당일 발급본) 등 제출

[기업]

-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대전일자리정보망(www.jobdaejeon.or.kr) 을 통해 신청
- (신청서류)
 -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(대전 소재 및 업종 확인)
 - ②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공고일('25.1.22.) 이후 발급본)
 - ③ 구인신청서(대전일자리정보망 서식자료실 양식 사용)
 - ④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('23, '24년 매출 中 택 1/연매출액 확인용)
 - ⑤ 고용보험사업장취득자명부('23, '24년 中 과세표준증명원 제출년도와 동년도 12.31자 발급분) 등 제출
 - ※ 모든서류는 최초 제출 서류만 인정하며, 추후 변동사항에 대해 추가심사 하지 않음.
 - ※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5%이내(소수점 이하는 절상, 최대5인까지)에서 인턴을 채용할 수 있음(일용근로내역은 제외).
 - ※ 타 부처 등에서 실시하는 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, 피보험자 수의 25%이내(소수점 이하절상)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인원을 제외 후 잔여 인원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음
- 대전일자리지원센터 채용 행사 참여기업에 대해서 우선 배정

III

유의사항

- 제출서류는 지정서식 준수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심사내역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
-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선정된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향후 3년 동안 우리시 지원 사업 선정 시 배제함
- 심사기준 미숙지 또는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